

의안번호	2203129
의 퇴 인	김민전 의원
회 답 일	2024.09.11.
추계번호	24C31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9조의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지역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재량규정
2	안 제59조의3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등)	(제1항) 제59조의2에 따른 지원 및 지역 고등교육의 발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광역시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광역 지방자치단체, 학교, 지방교육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장 등으로 구성된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의 관할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학교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의무규정
		(제2항)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9조의2에 관한 사업,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과 지역의 협업체계 및 지역 고등교육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별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재량규정
		(제3항)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담기관에 제59조의2에 관한 업무 및 사업,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과 지역의 협업체계 및 지역 고등교육의 발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4항) 제1항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의무규정
3	안 제59조의4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설치)	(제1항) 제59조의2에 따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및 지역 고등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9조의2에 따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2. 제59조의7에 따른 학교에 대한 규제특례의 적용·변경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의무규정

		3. 교육 관련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 대학재정지원 관련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간 등의 고등교육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사항 6. 지역의 고등교육 관련된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및 지역 고등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항) 지원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조정·처리하거나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고 제59조의2에 따른 지원과 제59조의7에 따른 규제특례 사항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4	안 제59조의6 (전문기관의 지정)	(제1항) 교육부장관은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5까지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고 지역 고등교육 관련 조사·분석·평가·연구·성과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2항)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항) 그 밖의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량규정
			의무규정
5	안 제59조의7 (규제특례)	(제1항)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이하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이라 한다) 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제59조의2의 안착과 학교의 발전에 필요한 규제특례(이하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제59조의3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항)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한다. (제3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하기 위하여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량규정
			의무규정

		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항) 제2항 또는 제3항의 기간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할 경우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재량규정
		(제5항) 교육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지원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항)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제특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학생의 학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협의체 및 학교 구성원들과 협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규제특례 신청 내용 2. 해당 특례를 통한 학교, 학생 및 교직원 등의 편익 3. 규제특례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4.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환경·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제7항)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규제특례를 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제8항) 교육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하는 경우 해당 규제특례의 심사기준을 제1항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9조의8에 따른 규제특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규제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0항) 규제특례를 받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은 규제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른다. (제11항)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규제특례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안 제59조의8 (규제특례의 변경·취소 등)	(제1항) 제59조의7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교육부장관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전에 규제특례의 대상이 되는 근거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2항) 제1항 단서에 따른 규제특례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제3항) 교육부장관은 제59조의7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신청한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규제특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9조의7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4항)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또는 제59조의7제1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신청한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규제특례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5항) 제4항에 따라 규제특례가 취소된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규제특례 사항을 계속해서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항) 그 밖에 규제특례의 연장·변경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59조의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안 제59조의3(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등) 안 제59조의4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설치) 안 제59조의6(전문기관의 지정) 안 제59조의7(규제특례) 안 제59조의8(규제특례의 변경·취소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도입 및 실행을 위해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와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전문기관을 지정하며, 관련 규제특례 등을 실시하는 내용임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Education)란 대학지원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이양하고 지역 주도로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한 대학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정책임¹⁾
- 개정안이 실시될 경우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과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전문위원회’ 운영, ‘전문기관’ 지정, ‘규제특례’ 등에 대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필요한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등 현시점에서 관련 재정소요에 대한 예상이 어려워 재정소요에 대한 합리적 예측이 어려움²⁾
 - (안 제59조의3, 안 제59조의4)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 ‘지역별 전담기관’이 운영될 수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조직들이 현행법 제21조와 제8조의 ‘지역협업위원회’, ‘전담기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위원회’와 유사한 재정규모로 사업이 설계될 경우 재정소요변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 (전담기관) 개정안의 ‘전담기관’은 고등교육기관과 지역의 협업체계 및 지역 고등교육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현행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체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전담기관’과 그 사업규모 및 소요예산이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으로 볼 경우 전담기관 지정과 관련된 추가재정소요 변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개정안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설립목적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지원과 지역 고등교육의 발전 등을 심의하기 위

1) 개정안의 제안이유 참조

2) 개정안은 안 제59조의2(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등교육기관을 지역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다만, 동 조항은 선언적·권고적 형식의 조항으로 관련 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한 것이고, 이를 현행법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역의 협업체계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지역협업위원회’와 규모 등이 유사한 것으로 볼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 지원위원회는 현행법 제8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위원회’와 교육부장관인 설치 주체가 동일하고, 위원수도 20명으로 같으며, 목적 또한 각각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및 지역고등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개정안)와 지방대학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현행법)으로 유사한 점이 있으므로, 회의 횟수 등이 유사하게 운영될 경우 개정안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³⁾
 - (전문위원회) 개정안의 전문위원회가 현행법 제8조의2에 따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와 달리 분야별로 설치되고 구성위원수 등이 다르게 구성될 경우 재정소요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나, 관련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시점에서 구체적 재정소요를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 (안 제59조의6)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역 고등교육 관련 조사·분석·평가·연구·성과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세부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구체적 소요비용에 대한 추계가 곤란함
- 교육부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전국 단위에서 RISE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사·연구·성과관리·데이터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예정임
 - 다만, 현시점에서 구체적 조직과 인원 및 예산규모를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소요비용에 대한 추계가 곤란함
- (안 제59조의7 및 안 제59조의8) 개정안은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특례를 하도록 하면서, 이의 연장 및 변경, 취소에 대하여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세부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구체적 소요비용에 대한 추계가 곤란함
- 현행법 제22조는 지역협업위원회 장의 신청에 따라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해당 계획에 특화지역의 고등교육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

3) 참고로 동 개정안과 같이 발의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03172호)에서는 현행법 제8조와 제21조가 삭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특례와 적용범위, 규제특례의 적용을 받는 고등교육기관 등이 포함됨

- 동 개정안과 같이 발의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2203172호)에서는 현행법 제22조 등을 삭제하면서,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 변경·취소 등도 함께 규정함
- 다만, 개정안에 따라 규제특례의 신청주체가 변경되었고, 규제특례의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개정안에 따라 증가하게 될 규제특례에 따른 재정지출 변경여부를 현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움

- 이에 개정안 관련 재정소요를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